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6회 임시회
2020. 10. 14.(수)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충 청 북 도 의 회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윤남진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0년 10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6일

3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에 따라 **중앙의 기본계획과 지방의 시행계획을 연계**하고, **소비생활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**함

○ 사업자의 책무,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, 공정거래질서 확립, 도민생활의 안정대책 등 **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규정 신설**

○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 등 전반적인 조례의 체계·내용 개선

4. 주요내용

가.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, 도와 사업자의 책무 규정(안 제3조 ~ 안 제5조)

나.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규정(안 제6조 ~ 안 제15조)

다.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(안 제16조 ~ 안 제17조)

라. 소비자생활센터의 설치 및 분쟁 해결 규정(안 제18조 ~ 안 제24조)

마.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지원(안 제25조 ~ 안 제26조)

바.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규정 (안 제27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가. 제출배경

○ 「소비자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,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도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**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** 하려는 것임

○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, **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**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나. 주요 개정내용

○ 안 제3조에 소비생활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,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, 안 제5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**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**하였으며,

○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**소비자의 권익 증진**을 위해,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계량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과 규격의 적정화 규정을 신설하고, 소비자교육, 정보제공, 공정거래질서의 확립, 취약계층의 보호, 개인정보 보호 등에 **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**함

○ 안 제16조, 안 제17조는 중앙정부의 다음 연도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○ 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위한 전담기구인 **소비자생활센터*를 설치**하여 **피해처리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**하고

[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]

- 센터개소 : 2003. 8. 20.
- 근무인원 : 2명(일반임기제 1명,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파견 1명)
- 주요기능 : 상담·피해구제처리, 분쟁조정 중재, 소비자 안전을 위한 위해정보 수집 및 감시 등
- 추진실적

연도별	상담 접수 및 처리실적(건)						
	계	비율	상담·정보제공	비율	피해구제	비율	월평균
2018년	8,587	100%	6,909	80.5%	1,678	19.5%	716
2019년	7,716	100%	6,304	81.7%	1,412	18.3%	643
2020년 상반기	3,054	100%	2,504	82.0%	550	18.0%	509

○ 안 제25조, 안 제26조에서는 **소비자단체**의 업무와 소비자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**보조금 지원 규정을 명시**하였음

○ 안 제27조는 소비자권익증진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**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**를 규정하였음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「소비자 기본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로서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**도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**하려는 것으로

○ 소비자의 책무, 사업자의 책무,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, 공정거래질서 확립, 도민생활의 안정대책 등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다수의 규정들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